

보도시점 : 2024. 10. 3.(목) 11:00 이후(10. 4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10. 3.(목)

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「항공사업법」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

- 사업계획 무단 변경, 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항공사에 엄정 처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항공사업법」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*한다고 밝혔다.

* (과징금) 사우디아항공 1억원,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

(과태료)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, 춘추항공·에어재팬·라오항공·그레이터베이항공·루프트한자·말레이시아항공·피치항공 각 2백만원

○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*(9.6)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.

* (구성) 국토부 항공정책관(위원장), 변호사,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7명

□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,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-리야드 주3회('24.3.31~10.26)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,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.

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수수료임, 유류할증료,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,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('24.7.31~8.7)한 결과, 춘추항공·에어재팬·라오항공·그레이터베이항공·루프트한자·말레이시아항공·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.

③ 항공사는 지연·결항 등으로 **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**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**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**하여야 하나, 티웨이항공은 '24.3.31~6.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,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, 총 1,400만원이 부과된다.

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(웻리스; Wet-Lease)*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, 카타르항공은 한-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'23.4월~'23.12월 기간 중 인천-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.

* 항공기만 임대하는 드라이리스(Dry-Lease)와 달리 임대사로부터 항공기 뿐 아니라 승무원까지 일괄 임차하는 것으로, 항공기 등록국적, 안전관련증명, 승무원 고용계약은 임대국임대사로 유지

□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**엄정한 처분을 결정**하였다”면서,

○ “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**재발되지 않을** 것을 항공사에 **당부**하는 한편, 앞으로도 항공사의 **법령 준수**를 철저히 **관리 감독**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(사우디아항공, 카타르항공) (총액운임 표시 위반 7개 항공사)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		담당자	주무관	박초롱 (044-201-4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희 (044-201-4208)
		담당자	주무관	김재형 (044-201-4217)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(티웨이항공)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선 (044-201-4231)
		담당자	주무관	유동희 (044-201-4230)